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안내

1.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대행위의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음, 조르고 비틀, 할멈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강하게 흔들, 신체 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을 던짐, 거꾸로 매달,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 화상을 입힘 등)

<신체적 징후>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발생 및 회복에 시차가 있는 상처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심한 구타 및 물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입술, 잇몸, 눈, 손목, 발목 등 부위의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긴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자국
- 담배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알고 있는 물체 모양(다리미 등)의 화상 자국, 회복 속도가 다양한 화상 자국
- 치료하지 않아 방치되거나 악화된 상처 및 부상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놀라는 모습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는 모습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및 가족에 대한 거부감과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
-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
- 상처나 부상에 대한 불평
- 결석이 잦고 떨어지는 집중력과 학업 수행 능력
- 공격적·적대적·폭력적인 행동
- 자기 비하 발언 및 자해 등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
- 상대방의 작은 동작에도 놀라거나 방어적인 태도

2)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 라고도 한다

<학대행위의 예시>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별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따돌리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집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등)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언어 및 신체 발달 저하
- 탈모
- 수면장애로 인한 예민, 불안함
- 식이장애로 인한 위궤양, 복통

<행동적 징후>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 시도
- 실수에 대해 과도한 걱정과 불안한 모습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는 행동
- 법이나 규칙을 무시한 일탈행동
- 요구가 많고 지나치게 관심을 받으려 하는 행동
- 지나치게 불평불만이 많은 행동
-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다툼이 잦으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행동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 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3) 성학대 (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학대행위의 예시>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애무에 의한 성행위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신체적 징후>

-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 소변 또는 대변을 볼 때 통증 호소 (대변의 혈액)
- 성기 부위의 통증 호소
- 옷(속옷)이 찢겨 있거나 피에 젖어 있거나 얼룩져 있음
- 입천장의 손상

<행동적 징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속한 성 지식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및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저조한 학업 수행
- 지나치게 자주 오랫동안 씻는 행동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
-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날 정도로 달라진 식습관
-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비밀로 하려는 모습
- 불안해하고 쉽게 잠들지 못함. 악몽을 꾸는 등 공포감
-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등 퇴행 행동
- 자살 시도 및 자해, 문란한 성관계 등 자기 파괴적 행동
- 혼자 있기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혼자 있으려고 하는 모습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 집중을 못 하는 모습
- 비행 및 가출, 약물 및 알코올 남용
- 식이장애,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4) 방임 및 유기 (Neglect)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학대행위의 예시>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미인정결석(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신체적 징후>

-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모습
- 개인위생이 불량하며 개선되지 않는 지저분한 상태
- 지속적 악취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불량한 건강 상태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행동적 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 및 훔치거나 먹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
-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지나치게 적거나 불균형한 신체 상태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모습
- 지속적인 피로 호소 또는 불안정감
- 부족한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고 수업 중 자주 조는 모습
- 품행장애

3. 아동학대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자료출처 : 아동학대예방 가이드북(교육부)에서 발췌

2022. 9. 1.

부천덕산초등학교장